

#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

## (김용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45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4. 19.

발의자 : 김용판 · 서범수 · 강대식

이채익 · 박덕흠 · 김성원

강기윤 · 하영제 · 서일준

김선교 · 박성민 · 전봉민

홍석준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공단(이하 ‘공단’이라 함)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년 연속 사업적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인 검사·인증 수입만으로 기관의 인건비, 경상비, 사업비 등 기관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발생함.

이와 관련하여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60조(보조금 등)는 사업에 한정된 보조금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어 부분 개정하여 기관 운영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함.

또한 공단의 안전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60조).



##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사업수행”을 “운영 및 사업수행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,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검사,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0조(보조금 등)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<u>사업수행</u>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0조(보조금 등)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<u>운영 및 사업수행</u>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.</p> <p>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부품 등의 <u>안전인증</u>, 승강기의 설치 및 <u>안전관리</u> 검사,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.</p>